

# 국회,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

## 개정안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는?

/ 법무법인(유) 지평 노동팀



국회는 2018년 5월 28일

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

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

1/8

JIPYONG

법무법인[유] 지평

3/14

‘최저임금 산입범위’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 
급여항목 중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키는  
임금의 범위를 말합니다.

##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질수록

실제 지급한 임금 전체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 
판단할 비교대상임금이 되며

##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질수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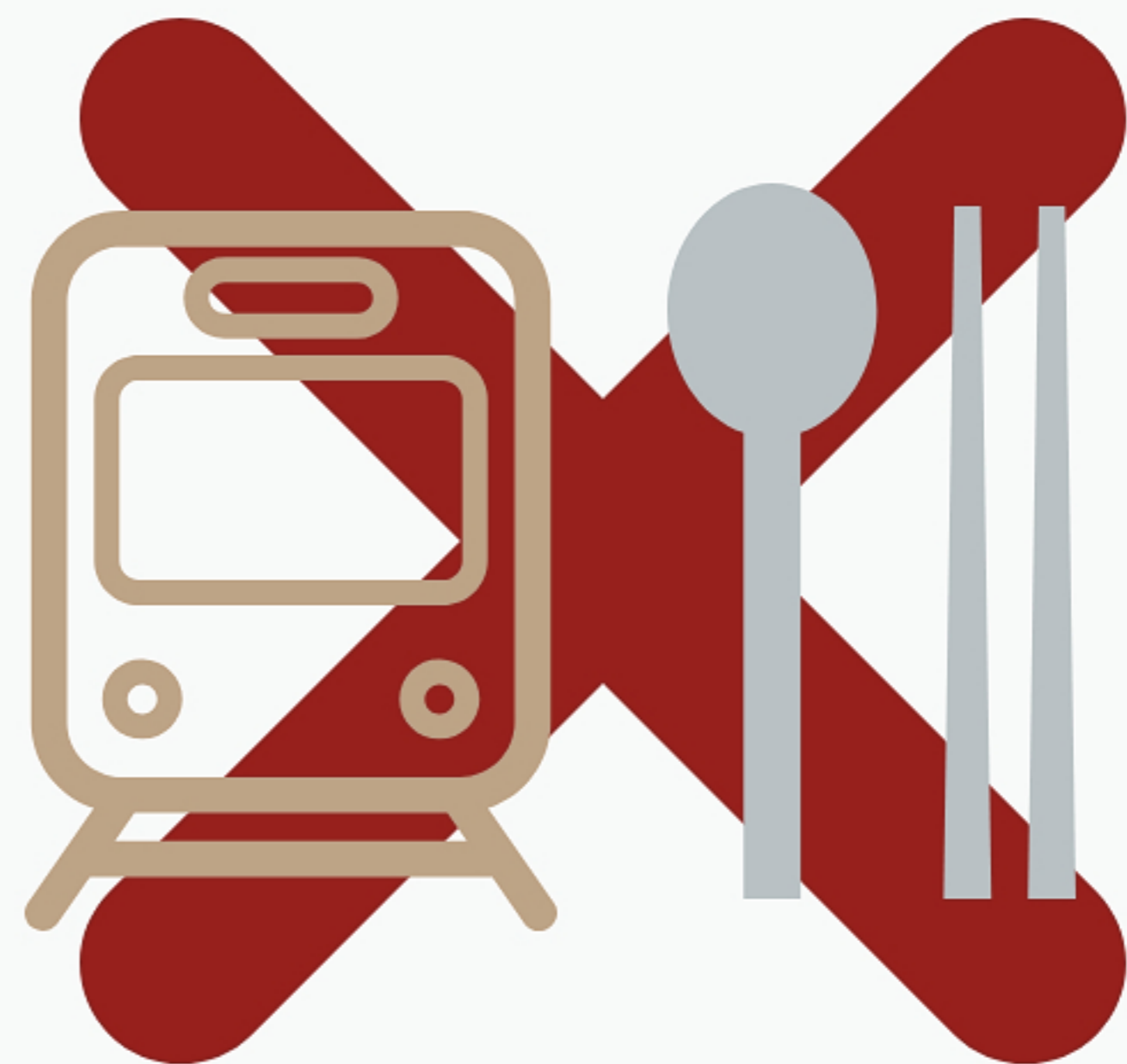
실제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 
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.

## 현행 최저임금법은

기본급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·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

반면 연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나 급식수당, 통근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### >>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/제외 항목



연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나 급식수당,  
통근수당 등의 복리후생적 임금

## 이에 비해 개정안은

-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그에 준하는 임금 중에서 해당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25%(2018년 기준 393,442.5원)를 초과하는 부분과
- ②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(식대, 숙박비, 교통비 등) 중 해당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7%(2018년 기준 110,163.9원)를 초과하는 부분을 추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, 월 평균 393,442.5원 이상의 상여금과 110,163.9원 이상의 복리후생적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의 경우, 다소나마 최저임금법 인상에 대응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## >> 최저임금법 개정 전/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비교

### <최저임금법 개정 전>

2018년 5월  
급여 명세서

기본급 1,570,000원

상여금 493,442.5원

식대 100,163.9원

교통비 50,000원

---

총액 2,213,606.4원

### <최저임금법 개정 후>

2018년 5월  
급여 명세서

기본급 1,570,000원

상여금 493,442.5원

(상여금 중 100,000원)

식대 100,163.9원

교통비 50,000원

(식대/교통비 중 40,000원)

---

총액 2,213,606.4원

법 개정 전  
최저임금 산입범위  
157만 원

법 개정 후  
최저임금 산입범위  
171만 원

## 이에 더해 개정안은

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, 2024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의 전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.

②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,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## 최저임금법 개정안은

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쟁점 1



7/8



#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법률 자문은 지평 노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

법무법인(유) 지평은 노동팀 전담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고객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, 이광선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이광선 변호사

Email. [kslee@jipyong.com](mailto:kslee@jipyong.com)

Tel. 02-6200-1787

EMAIL TEL



권영환 변호사

Email. [yhkwon@jipyong.com](mailto:yhkwon@jipyong.com)

Tel. 02-6200-1877

EMAIL TEL

